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9718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 : 양부남 · 강유정 · 권향엽

김한규 • 민병덕 • 민형배

박균택 • 박정현 • 안도걸

윤호중 • 전진숙 • 정진욱

조계원 · 채현일 · 허성무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던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데 1개월 이상지연된 사실이 확인되었음.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통보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별 통보 기간이 제각각이었음.이러한 비위사실 통보는 비위 인물이 공직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한조치로,지연 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.

또한,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감사에서도 고위직의 특혜 채용과 공직윤리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으나, 일부는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 능한 상황임. 이에 따라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다수 있으며, 재취업 및 공직 재임용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.

이에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,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

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제7항 등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6항까지의"를 "제7항까지의"로 한다.

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감사원의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3(공직후보자 등의 관리)	제19조의3(공직후보자 등의 관리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감사원
	의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비위
	사실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
	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
	내에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
	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야
	<u>한다.</u>
<u>⑦</u> 제1항부터 <u>제6항까지의</u> 규	<u>⑧</u> <u>제7항까지의</u>
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	
수집 절차, 직접 열람할 수 있	
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	
용・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